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9. 14 선고 2021가단14807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주식회사 C

2. D

변 론 종 결 2021. 8. 17.

판 결 선 고 2021. 9. 14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,692,389원 및 그 중 67,357,119원에 대하여 2021. 5. 6.부터 2021. 5. 31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 사실의 인정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【인정 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채무금 67,692,389원(= 원금 67,357,119원 + 2021. 5. 5.까지의 지연손해금 335,270원) 및 그 중 67,357,119원에 대하여 2021. 5. 6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21. 5. 31.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상근

별지